

2026년 1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

□ 관련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-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(예산의 전용, 이용, 이체)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2 제3항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□ 전용내역 : 1건, 9,100천원

○ 전용금액 : 9,100천원

○ 전용내역

- (기존) 「의회 입법, 법률 고문 운영」 사무관리비 (201-01)

⇒ (변경) 「의회 입법, 법률 고문 운영」 배상금등 (305-01)

○ 전용사유 : 소송 패소 및 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집행사유 발생

-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(변호사 보수, 인지대, 송달료 등) 발생

- 해당 비용은 사무관리비(201-01)가 아닌 배상금등(305-01)으로 집행 가능

○ 전용일 : 2026. 3. 23.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현액	전용 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의정활동 지원강화	입법활동 지원사업	의회 입법, 법률 고문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158,840	-	△9,100	149,740
			배상금등 (305-01)	-	9,100	-	9,100